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371 호

2001 년 1 월 31 일 수 요일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30호(인천광역시남동구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 --- 3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31호(인천광역시남동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
자에대한과태료징수규칙중개정규칙) ----- 8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32호(인천광역시남동구부동산중개
업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규칙) ----- 13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33호(인천광역시남동구제안규칙중개정규칙) ----- 21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1-31호(무단방치차량강제폐차공고) ----- 22

회	남이환	270/8	민준	이두영	신영	오영	
람							

발행 : 인천광역시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규	칙
---	---

인천광역시남동구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1. 1. 31.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30호

인천광역시남동구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분임경리관 항목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7조중 “경영재정과장”을 “허가재무과장”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등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분임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기획감사실장 및 허가재무과장, 세무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예산의 정리) 제2항중 “주무계장”을 “주무담당”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각, 실과장은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제23조 제2항중 “관서당경비”를 “일상경비”로 한다.

제30조 제2항중 “5월31일”을 “5월19일”로 한다.

제31조중 “징수과장”을 “세무과장”으로 “경영재정과장”을 “허가재무과장”으로 한다.

제99조(금고의 구분)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감시·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민간실비보상금 등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0조 제1항의 “다음달 10일까지”를 “매 분기말 익월 10일까지”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그달 20일까지”를 “매 분기말 익월 20일까지”로 한다.

제131조(출납계산서)제1항의 “다음달 10일까지”를 “매 분기말 익월 10일까지”로 한다.

제1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당해 공사,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9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야 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 규칙 별지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 별지 제95호 서식 > : 시군자치구의 경우만 해당 < 표 지 >									
보 보 지출계산서 출발서 지수 지출원 년월일 작성 성명 인 비고									
< 기재요령 > 1) 과목단에는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의 부호와 명칭을 기입 2) 각 기관별 자금배정액을 기입 3) (본원과목정정액)란에는 증액은「후서」, 감액은「주서」 < 내 용 >									

현 행 개 정 안									
< 별지 제95호 서식 > < 내 용 >									
< 기재요령 > 1) 과목단에는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의 부호와 명칭을 기입 2) 각 기관별 자금배정액을 기입 3) (본원과목정정액)란에는 증액은「후서」, 감액은「주서」 < 내 용 >									

현 행										개 정 안																																																																																																																																									
< 별지 제96호 서식 > 〈표 지〉 년도 _____ 월 _____ 일상경비출납계산서 출납서 _____ 채 _____ 지 수 _____ 장 _____ 관서 _____ 인상경비출납원 _____ 직 _____ 성명 _____										< 별지 제96호 서식 > 〈표 지〉 년도 _____ 월 _____ 일상경비출납계산서 출납서 _____ 채 _____ 지 수 _____ 장 _____ 관서 _____ 인상경비출납원 _____ 직 _____ 성명 _____																																																																																																																																									
〈내 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과목</th> <th colspan="3">일상경비수령액 (A)</th> <th colspan="3">지 출 액 (B)</th> <th colspan="2">잔 액 비 고</th> </tr> <tr> <th>전월말 잔액(1)</th> <th>본월 입금(2)</th> <th>반납액(3) (1+2-3)</th> <th>전월말 잔액(4)</th> <th>본월 출금(5)</th> <th>반납액(6) (4+5-6)</th> <th>잔 액 (A-B)</th> </tr> </thead> <tbody> <tr><td>총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관</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항</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세항</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세세항</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목</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과목	일상경비수령액 (A)			지 출 액 (B)			잔 액 비 고		전월말 잔액(1)	본월 입금(2)	반납액(3) (1+2-3)	전월말 잔액(4)	본월 출금(5)	반납액(6) (4+5-6)	잔 액 (A-B)	총계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내 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과목</th> <th colspan="3">일상경비수령액 (A)</th> <th colspan="3">지 출 액 (B)</th> <th colspan="2">잔 액 비 고</th> </tr> <tr> <th>전월말 잔액(1)</th> <th>본월 입금(2)</th> <th>반납액(3) (1+2-3)</th> <th>전월말 잔액(4)</th> <th>본월 출금(5)</th> <th>반납액(6) (4+5-6)</th> <th>잔 액 (A-B)</th> </tr> </thead> <tbody> <tr><td>총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관</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항</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세항</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세세항</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목</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과목	일상경비수령액 (A)			지 출 액 (B)			잔 액 비 고		전월말 잔액(1)	본월 입금(2)	반납액(3) (1+2-3)	전월말 잔액(4)	본월 출금(5)	반납액(6) (4+5-6)	잔 액 (A-B)	총계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과목	일상경비수령액 (A)			지 출 액 (B)			잔 액 비 고																																																																																																																																												
	전월말 잔액(1)	본월 입금(2)	반납액(3) (1+2-3)	전월말 잔액(4)	본월 출금(5)	반납액(6) (4+5-6)	잔 액 (A-B)																																																																																																																																												
총계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과목	일상경비수령액 (A)			지 출 액 (B)			잔 액 비 고																																																																																																																																												
	전월말 잔액(1)	본월 입금(2)	반납액(3) (1+2-3)	전월말 잔액(4)	본월 출금(5)	반납액(6) (4+5-6)	잔 액 (A-B)																																																																																																																																												
총계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인천광역시남동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1. 1. 31.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31호

인천광역시남동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규칙중개정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부과대상자)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법 제39조 제2항 제3호 및 제8호, 제9호,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별표(과태료부과기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제3호서식 내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별표]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위 반 사 항	관련법규	처분규정 내 용	처 분 기 준		
			법 인 인 공 인 중개업자	공 인 중개사인 중개업자	중개인인 중개업자
1. 등록관청에 사무소이전 신고를 위반한 경우	법제12조	100만원이하 의과태료	50만원	30만원	20만원
2. 휴업 및 폐업신고 위반의 경우	법제18조	100만원이하 의과태료	40만원	20만원	10만원
3. 중개완성시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 본 교부의무 위반의 경우 · 보증금액 ·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 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 보증기간	법제19조 제5항	100만원이하 의과태료	40만원	30만원	20만원
4. 사무소내 등록증, 중개수수 료요율표, 공인중개사 자 격증, 기타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 지 않은 경우	법제26조	100만원이하 의과태료	40만원	30만원	20만원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 부 의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자격증)번호		상 호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당 초 납 부 기 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당 구금고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서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하겠습니까.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중개업자종별		◦ 법인 ◦ 공인중개사 ◦ 중개인		
영업소	등록증번호		상호	
	소재지			
과태료 처분내역	부과관청		납부통지서번호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과태료처분사유			
과태료처분에 대한불복사유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와 관련입니다.

2.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이의 제 기 자	성 명	(한자)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중 개 영 업 소	등 록 번 호		상 호	
	소 재 지			
과 태 료 처분내역	과태료납부 통 지 일 자		과 태 료 금 액	
	부 과 관 청		이의제기일자	

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

인천광역시남동구부동산중개업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1. 1. 31.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32호

인천광역시남동구부동산중개업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규칙중개정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부동산중개업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허가”를“등록”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그 위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표 기준보다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 ③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때에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제6조제2항중“허가”를“등록”으로하고, 동항중 “허가증”을 “등록증”으로하여 제6조 및 제7조를 제7조 및 제8조로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청문의절차)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별표(행정처분기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행한 행정처분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별 지)

[별표]

행 정 처 분 기 준

위 반 사 항	관련법규	처분규정 내 용	처 분 기 준			비 고
			1 차	2 차	3 차	
1. 중개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인 경우에 당해법인 이 해산한 경우	법제22조 제1항제1호	당 연 등록취소	등록취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 로 중개업의 등록을 받은 경우	법제22조 제1항제2호	당 연 등록취소	등록취소			고 발 (법제38조 제1항)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단, 법인인 중개업자 의 임원중 결격사유에해 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 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제22조 제1항제3호	당 연 등록취소	등록취소			
4. 법제10조의 규정에 위반 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 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법제22조 제1항제4호	당 연 등록취소	등록취소			고 발 (법제38조 제2항)
5.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 에 위반하여 2이상 사무 소를 둔 경우	법제22조 제1항제5호		등록취소			고 발 (법제38조 제2항)
6. 등록증을 다른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법제22조 제1항제6호	당 연 등록취소	등록취소			고 발 (법제38조 제2항)
7.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업무를 행하거나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법제22조 제1항제7호	당 연 등록취소	등록취소			

[별표]

행 정 처 분 기 준

위 반 사 항	관련법규	처분규정 내 용	처 분 기 준			비 고
			1 차	2 차	3 차	
8. 최근 1년이내에 2회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이내에 3회이상 이 법에 의하여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 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경우	법제22조 제1항제8호	당 연 등록취소	등록취소			
9. 법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 게 된 경우	법제22조 제2항제1호 (법제23조 제1항제7호)	등록취소 및6월이 내업무정 지가능	6월	등록취소		
10.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 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 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 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법제22조 제2항제3호 (법제15조 제1호)	등록취소 및6월이 내업무정 지 가능	6월	등록취소		고 발 (법제38조 제2항)
11.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 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 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 거나 그 외에 사례·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라 도 금품을 받는 행위	법제22조 제2항제3호 (법제15조 제2호)	등록취소 및6월이 내업무정 지 가능	6월	등록취소		고 발 (법제38조 제2항)
12. 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 으로 하는 행위	법제22조 제2항제3호 (법제15조 제3호)	등록취소 및6월이 내업무정 지 가능	6월	등록 취소		고 발 (법제38조 제2항)

[별표] 행 정 처 분 기 준

위 반 사 항	관련법규	처분규정 내 용	처 분 기 준			비 고
			1 차	2 차	3 차	
13. 부동산의 분양·임대등과 관련있는 중서등의 매매·교환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법제22조 제2항제3호 (법제15조 제4호)	등록취소 및6월이내업무정지 가능	6월	등록취소		고 발 (법제38조 제1항)
14.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법제22조 제2항제3호 (법제15조 제5호)	등록취소 및6월이내업무정지 가능	6월	등록취소		고 발 (법제38조 제1항)
15.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조장하는 행위	법제22조 제2항제3호 (법제15조 제7호)	등록취소 및6월이내업무정지가 능	6월	등록취소		고 발 (법제38조 제2항)
16. 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 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법제22조 제2항제3호 (법제15조 제7호)	등록취소 및6월이내업무정지 가능	6월	등록취소		고 발 (법제38조 제2항)
17. 법제1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22조 제2항제4호	등록취소 및6월이내업무정지 가능	6월	등록취소		

[별표]

행 정 처 분 기 준

위 반 사 항	관련법규	처분규정 내 용	처 분 기 준			비 고
			1 차	2 차	3 차	
18. 법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한 경우	법제22조 제2항제5호	등록취소 및6월이 내업무정 지 가능	등록취소			
19. 중개업자가 법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법제22조 제2항 제6호	등록취소 및6월이 내업무정 지 가능	6월	등록취소		
20. 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범위의 제한을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법제23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및6월이 내업무정 지 가능	6월	등록취소		
21. 법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인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제23조 제1항 제4호	6월이내 업무정지 가능	1월 2월	3월 3월	6월 6월	
22.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제23조 제1항 제5호(법제16조 제1항)	및6월이 내업무정 지 가능	1월	3월	6월	
23.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때에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23조 제1항제5호(법제16조제2항)	6월이내 업무정지 가능	1월	3월	6월	

[별표]

행 정 처 분 기 준

위 반 사 항	관련법규	처분규정 내 용	처 분 기 준			비 고
			1 차	2 차	3 차	
24. 거래계약서의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법제23조 제1항제5호 (법제16조 제3항)	6월이내 업무정지 가 능	1월	3월	6월	
25.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등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아니한 경우	법제23조 제1항제5호 (법제17조 제1항)	6월이내 업무정지 가 능	1월	3월	6월	
26.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때에 그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23조 제1항제5호 (법제17조 제2항)	6월이내 업무정지 가 능	1월	3월	6월	
27. 법제16조의5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거나 거래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23조 제1항제5의2 호	6월이내 업무정지 가 능	1월	3월	6월	
28. 감독상 필요한 업무사항에 관한 보고나 또는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제23조 제1항제6호	6월이내 업무정지 가 능	1월	3월	6월	

[별표]

행 정 처 분 기 준

위 반 사 항	관련법규	처분규정 내 용	처 분 기 준			비 고
			1 차	2 차	3 차	
29.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등 조사 또는 검사시 방해하거나 질문에 불응할 때	법제23조 제1항제6호	6월이내 업무정지 가 능	1월	3월	6월	
30. 최근 1년 이내에 2회이상 이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	법제23조 제1항제10 호	6월이내 업무정지 가 능	1월	3월	6월	
31. 기타 부동산중개업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법제23조 제1항제11 호	6월이내 업무정지 가 능	1월	3월	6월	

인천광역시남동구제안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1. 1. 31.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33호

인천광역시남동구제안규칙중개정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제안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2호중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지방공무원직무보상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을 “의장권을 이미 취득하였거나 진행중인 것” 으로 한다.

제17조중 “우량상” 을 “장려상” 으로한다.

제19조제2호중 “우량상” 을 “장려상” 으로한다.

제20조제1호중 “특별상은 1창안당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를 “특별상은 1창안당
300만원” 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우수상은 1창안당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을 “우수상은 1창안당 200만원” 으로 하며, 동조 제3항중 “우량상은 1창안당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을 “장려상은 1창안당 100만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1-31호

무단방치차량강제폐차공고

우리구 관내에 무단방치 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자진이전(폐차)명령하오니, 해당차량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는 본 공고 기간내에 권리행사 하시기 바라며, 아래 공고 기간까지 자진이전(폐차)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는 강제처리(폐차, 매각)하고 아울러 동법 제81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규정에 의하여 형사고발 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 1. 3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1년 2 월 1 일 ~ 2001년 2 월 10 일 까지 (10일간)
2. 강제처리(폐차)일시 : 2001년 2 월 10 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인천폐차사업소
인천 남동구 논현동 423-2 ☎ 814-7077
 - (주)서울폐차사업소
인천 남동구 고잔동 184번지 ☎ 442-6660
 - 기전산업(주)
인천 남동구 고잔동 726-7 ☎ 814-4400
4. 강제처리(폐차)대상 차량 : 인천31거8284 외 15대

강 제 처 리 대 상 차 량

연번	강제처리대상차량		강제처리 대상차량 소유주		방 치 장 소 (인천 남동구)	비 고 (건인보관)
	차량번호	차 명	성 명	주 소		
812	인천31거8284	엑셀오토매틱	조한영	인천 남동 만수 84	구월3동 1113 노동청담장	
813	서울6누1740	베스타9	김형곤	서울 서초 서초1432-8	구월4동 1279-7	인천폐차 사업소
814	경북30마4894	쏘나타	강공원	경북 구미 원평동 188-1	간석4동 616-6 범양(아) 건너편	
815	충남7더8736	정보타이탄 2.5톤할어수송차	김관기	충남 연기군 조치원을 교리 4-13	논현동 111-151 삼신주차장 앞	
818	인천4나7239	르랑오토	유경춘	인천 남구 주안 1340-13	구월1동 1129-17	
819	인천30마2088	그랜저3.0	조종만	인천 남동 구월동 1126-5	구월1동 1407-1 구월여중 정문 앞	
820	인천35가1430	그랜저	강복례	인천 남동 구월 1157-11	구월1동 1160 성마을 교회 앞	
821	인천7나6737	정보타이탄1.4 톤와이드로우	이정일	인천 남동 구월 1160-11 덕진빌라 B/201	구월1동 1160 성마을 교회 앞	
822	경기40거2193	쏘나타	백정현	경기 평택 칠원 77-12 은혜빌라 라/401	남동공단 120블럭 3롯데 제일유지공업(주)옆	
823	부산3더5685	티코	이영환	부산 남구 용호 497-21	구월1동 1223-3	
824	인천30누8882	그랜저2.0 오토매틱	최재근	인천 남동구 구월동 258 팬더(아) 6/504	구월1동 1190 한민교회 앞	
825	인천1그4438	그랜저2.4	한순애	인천 중구 내동 180-2	구월1동 1446 농산물센터 쓰레기 적치장 외곽도로	
826	인천2나6538	엑셀	문대기	인천 부평구 갈산동 401-1	간서3동 173-25 대명장 여관 앞	
827	인천30거7648	그랜저2.4	구정길	인천 남동 남촌 623-9	남동공단 10블럭 6롯데	
828	인천7노3960	정보타이탄1.4톤 와이드로우	박광식	인천 연수 동춘동 917 롯데(아)104/203	남동공단 24블럭 11롯데 문진산업 앞	
829	경기1처1997	에스페로.SMT	임중문	경기 광명 소하 194-1	고잔동 311-6	

